

대전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1나125288(본소), 2021나125318(반소) 판결

[약정금 ·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주영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2. 11. 2.

판 결 선 고 2022. 12. 14.

제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0가소34531(본소), 2021가소 1392(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 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및 제1심 공동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6.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8.부터 반소장 송달일까지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원고)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6.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피고)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8.부터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는 2011년 6월경부터 2019년 10월경까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18. 10. 16. F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27. F으로부터 3,500,000원을 이체받았는데, 같은 날 그중 3,000,000원을 원고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기각)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10. 16.경 '당진 쪽에 투자할 곳이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10,000,000원을 빌려주면 7일 후에 14,000,000원으로 갚겠다'는 피고의 말에 응하여 같은 날 피고가 알려준 F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하였으나, 현재까지 3,000,000원만 변제받고 나머지 11,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8. 10. 16. F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4호증과 제1심법원 증인 G의 서면에 의한 증언은 갑 5호증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을 4, 5, 8호증에 비추어, 원고는 F의 권유로 피고와 함께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였고, 위 10,000,000원은 투자금 명목으로 F에게 이체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반소에 관한 판단(기각)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의 부탁으로 2018. 10. 27. 원고에게 3,000,000원을 이체하였으므로, 원고는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위 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 자체만으로도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선용, 판사 최리지, 판사 강병하